

	경조비 지급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21. 09. 13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의 경조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교수, 부교수, 조교수(겸임교원, 시간강사 제외)
2. 일반직원
3. 우리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

제3조(경조금 지급 구분) 경조금의 지급은 경사 및 애사로 하고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경사 : 본인의 결혼, 자녀의 결혼
2. 애사 : 본인의 사망, 배우자의 사망, 자녀의 사망, 부모의 사망, 배우자 부모의 사망

제4조(지급액) ①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경조금 지급액은 [별표]와 같다.

- ② 우리대학 교직원중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. 단 쌍방재직 시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한다.

제5조(지출 절차)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[별지 제1호 서식]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행정지원처에 제출한다.

제6조(지급) ① 경조사 관련 서류를 접수한 행정지원처는 결재를 얻은 후, 경조금을 지급한다.

- ② 지급명의를 총장(또는 대학)명으로 한다.

제7조(학교장) 학교장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1호와 같다. 다만, 2호의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총장이 서거하였을 때
2. 우리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서거하였을 때

제8조(장례준비위원회) ① 제7조에서 규정하는 해당자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 장례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, 장례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다만 총장 유고시에는 학사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
- ③ 학교장의 절차는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유가족이 학교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사에 따른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 이외 경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